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,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립·종합 및 조정”을 “수립·종합·조정 및 메시지의 관리”로 한다.

1의2. 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

1의3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간 정책협의기구 운영

제6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9호까지, 제11호, 제11호의2, 및 제15호부터 제31호”를

“제10호까지, 제11호의2,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72호부터 제77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2조제3항제10호, 제12호부터 제14호, 제32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71호부터 제76호”를 “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70호까지 및 제77호”를 “제71호까지 및 제78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기업환경정책과, 정책분석평가과, 국제통상협력과, 글로벌성장정책과, 기업금융과, 인력정책과”를 “기업환경정책과, 인력정책과, 정책분석평가과, 글로벌성장정책과, 기업금융과, 국제통상협력과”로,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“비전 및 메시지의”를 “비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0항, 제11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1항, 제14항 및 제10항으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각각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

며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명”을 “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(4급 3명)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, “같다”를 “같으며, 별표

5의2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, “같다”를 “같으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3명(교장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9조의2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별표3, 별표4, 별표5, 별표5의2, 별표8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488
정무직 계	2
장관	1
차관	1
별정직 계	5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	1
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	1
비서(7급 상당)	1
비서(9급 상당)	1
일반직 계	481
고위공무원단	16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7
임기제 서기관(비상계획담당관)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9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172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43

행정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 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	27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전산서기 또 는 방송통신서기	17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8
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비서(8급 상당)	1
운전서기보	3
사무운영서기보	9
기록연구사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488
정무직 계	2
장관	1
차관	1
별정직 계	5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	1
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	1
비서(7급 상당)	1
비서(9급 상당)	1
일반직 계	481
고위공무원단	16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7
임기제 서기관(비상계획담당관)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9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	

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183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34
행정주사보 · 세무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 업연구사	26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16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8
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비서(8급 상당)	1
운전서기보	2
사무운영서기보	9
기록연구사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

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

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404
일반직 계	404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	5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	6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 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66
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시 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55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 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운전주사보	77 1
행정서기·세무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33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	23
방호서기보	6
운전서기보	10
사무운영서기보	4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의2]

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

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404
일반직 계	404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	5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6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70
행정주사·세무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51
행정주사보·세무주사보·통계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·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보	77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·세무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33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23
방호서기보	6
운전서기보	10
사무운영서기보	4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2항, 제19조의2제4항,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 관련)

1. 특구혁신기획단장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고위공무원단	1

2. 특구정책과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20
일반직 계	20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13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2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	2

3.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고위공무원단	1

4. 소상공인손실보상과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8
일반직 계	8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의료기 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4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2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대변인) ① (생 략)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, 디 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</u> <u>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</u> <u>관으로</u> , 디지털소통팀장은 <u>서기</u> <u>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</u> <u>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</u> <u>사무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관으로</u> 보 한다. ③ · ④ (생 략)	제2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</u> <u>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 ----- <u>과학</u> <u>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</u> <u>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</u> <u>행정사무관</u> ----- ----.
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생 략)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혁신 담당관, 재정행정담당관, 규제 개혁법무담당관, 정보화담당관,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, 기획혁신담당관, 재정행정담당 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 보화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</u> <u>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</u> <u>관으로</u> ,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 제 서기관으로 보한다. ⑤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	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</u> <u>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 ----- -----.
⑤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	⑤ -----

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----- 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1의2. 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</u>
<신설>	<u>1의3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간 정책협의기구 운영</u>
2.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·종합 및 조정	2. ----- 수립·종합·조정 및 메시지의 관리
3. ~ 16. (생략)	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⑥ ~ ⑨ (생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감사관) ① (생략)	제6조(감사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, 감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8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.
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·② (생략)	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소기업정책관은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	③ ----- -----

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, 제11호, 제11호의2, 및 제15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④ 글로벌성장정책관은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10호, 제12호부터 제14호, 제32호부터 제51호까지 및 제7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⑤ 기술혁신정책관은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70호까지 및 제77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

⑥ (생략)

⑦ 중소기업정책실에 정책총괄과, 기업환경정책과, 정책분석평가과, 국제통상협력과, 글로벌성장정책과, 기업금융과, 인력정책과, 판로정책과, 기술혁신정책과, 디지털혁신과, 기술개발과, 기술보호과, 지역혁신정책과, 제조혁신과, 기업구조

----- 제10호까지, 제11호의2,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72호부터 제77호-----.

④ -----

--- 제11호 및 제21호부터 제51호-----

-----.

⑤ -----

----- 제71호까지 및 제78호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 기업환경정책과, 인력정책과, 정책분석평가과, 글로벌성장정책과, 기업금융과, 국제통상협력과-----

개선과 및 입지환경개선과를 두 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 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공업연구 관</u> 으로 보한다.	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 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.
⑧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중소기업 중장기 정책 <u>비전</u> <u>및 메시지의 관리</u>	5. ----- <u>비전</u> - -----
6. 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 <u>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</u> <u>대응</u>	<삭 제>
7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<u>등 경제부처 간 정책협의기구</u> <u>운영</u>	<삭 제>
8. ~ 14. (생 략)	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⑩ (생 략)	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
⑪ (생 략)	⑭ (현행 제11항과 같음)
⑫·⑬ (생 략)	⑫·⑬ (현행과 같음)
⑭ (생 략)	⑩ (현행 제14항과 같음)
⑮ ~ ㉓ (생 략)	⑮ ~ ㉓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 ~ ④ (생 략)	제10조(창업벤처혁신실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 과, 기술창업과, 창업생태계과,	⑤ ----- -----

청년정책과, 벤처정책과, 벤처
투자과, 투자관리감독과, 미래
산업전략팀, 특구운영과 및 특
구지원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
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
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팀장은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
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
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
로 보한다.

⑥ ~ ⑮ (생 략)

제11조(소상공인정책실) ① ~ ④
(생 략)

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
정책과, 디지털소상공인과, 소
상공인성장촉진과, 지역상권과,
전통시장과, 상생협력정책과,
사업영역조정과, 불공정거래개
선과 및 소상공인제도약과를 두
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
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
관으로 보한다.

⑥ ~ ⑭ (생 략)

제13조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① 1
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

----- 부
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
관 -----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
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
관 · 행정사무관 -----
-----.

⑥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상공인정책실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
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
-----.

⑥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①

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,
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
로 하고,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
업청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
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다만,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
청장 중 대전·세종지방중소벤
처기업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
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
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
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
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
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에 지역정책과, 성장지원과, 창
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
고,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
두되,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라 보한다.

1.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
역정책과장: 부이사관·서기
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
구관
2. 제1호를 제외한 1급지 지방
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
관 -----.

----- 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
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--
2. -----

장,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, 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,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: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. 다만, 각 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3.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장,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및 창업벤처과장: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

4.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정책과장: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. 다만, 각 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
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 --. -----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.

3. -----

 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-----

4. -----
 -----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행정사무관 -----.

하여 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
· 기술서기관· 행정사무관·
공업사무관· 시설사무관 또는
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5. 그 밖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의 각 과장: 행정사무관· 공업
사무관· 시설사무관· 전산사
무관 또는 공업연구관. 다만,
각 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
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
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
배정·운영하는 서기관· 기술
서기관· 행정사무관· 공업사
무관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
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4조(사무소) ① (생략)

② 사무소장은 서기관· 기술서
기관· 행정사무관· 공업사무관
· 시설사무관· 전산사무관 또
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5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
무원의 정원) ① 중소기업
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
표 3과 같다. 다만, 「중소벤처

----- 과학기술
술서기관· 서기관· 공업사무
관· 시설사무관· 전산사무관
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5. -----
----- 공업사무관· 시설
사무관· 전산사무관· 행정사
무관 -----.

----- 과학기술서기
관· 서기관· 공업사무관· 시
설사무관· 전산사무관 또는
행정사무관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무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과학기술서기관
· 서기관· 공업사무관· 시설사
무관· 전산사무관· 행정사무관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
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중소기업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또는 5급 1명, 6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.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.

② -----

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(4급 3명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----- 같으며, 별표 5의2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·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.

제17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
기관 직제」 제28조에서 “중소
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개방
형직위”란 대변인, 감사관, 지역
기업정책관 및 창업벤처혁신실
장을 말한다.

②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
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
등학교 ·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
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
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

있다.

③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, 특구운영과장, 불공정거래개선과장, 대구·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9조의2(특구정책과) ① (생략)

② 특구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, 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9조의4(소상공인손실보상과)

①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(생략)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제2조(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

<삭 제>

제19조의2(특구정책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4(소상공인손실보상과)

① 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
<삭 제>

치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
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
직위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
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
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
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
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
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
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
다.